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1. 12. 17.)
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목포시의회 규칙 제8호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를 “「지방자
치법」 제65조”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 ①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중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한다.

제5조 중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를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로 한다.

제9조 중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포시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 출석요구서(제5조 관련)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석기한			
출석요구사유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의회 의원 <u>윤리특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 구성은 각 호와 같다.</p> <p>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5조-----</p> <p>----- 윤리특별위원회-----.</p> <p>제2조(구성)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p> <p>제3조(소위원회)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p>
<u><신 설></u>	<p>제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p>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제5조(심문) -----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

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윤리심사·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제5조 관련)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석기한			
출석요구사 유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9조(제척과 회피) ①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

[별지 제1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 출석

요구서(제5조 관련)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석기한			
출석요구사 유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